

제 15 장 전자상거래

제 15.1 조 목적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 및 기회, 그 이용 및 개발에 대한 장벽 회피의 중요성,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적용가능성을 인정한다.

제 15.2 조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양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전달되거나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제7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8장(금융서비스) 및 제11장(투자)의 관련 규정에 포함된 의무의 대상이고 그러한 의무에 적용가능한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예외 또는 비합치 조치를 조건으로 함을 확인한다.

제 15.3 조 관세

어떠한 당사국도 양 당사국 간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15.4 조 국내 규제

1. 각 당사국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범법과, 적절한 경우, 그 밖의 국제 기준·지침 및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를 규제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 가.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제적 부담의 최소화, 그리고
 - 나. 전자상거래를 규제하는 당사국의 조치가 전자상거래의 산업 주도 발전을 지원하도록 보장

제 15.5 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1. 각 당사국은 전자거래의 당사자에게 다음을 허용하는 전자인증을 규제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 가. 그 거래에 대하여 적절한 인증 방법의 결정, 그리고
 - 나. 자신의 전자거래가 인증에 관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입증할 수 있는 기회의 보유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경우, 당사국은 전자금융거래와 같은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보안이 요구되는 거래에 대하여 인증의 방법이 특정한 보안 기준을 충족하거나 그 당사국의 법 또는 정책에 따라 공인된 기관에 의하여 증명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양 당사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기초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이 발급하는 전자서명의 상호 인정을 위하여 노력한다.
 4. 양 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발급하는 전자서명의 상호운용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 15.6 조 온라인 소비자 보호

1.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에 참여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형태의 상거래에 참여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조치와 최소한 동등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양 당사국은 소비자의 복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활동에 관한 각 당사국의 국가 소비자 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제 15.7 조 종이없는 무역

1. 각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가 대중에게 전자적 형태로 이용가능하도록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전자적 무역행정문서를 종이 형식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3. 종이없는 무역의 사용을 규정하는 이니셔티브를 개발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국제기구에서 합의된 방법을 고려한다.

제 15.8 조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 정보의 보호를 보장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개인 정보 보호 기준의 개발에 있어,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기구의 국제 기준·지침 및 권고를 고려한다.

제 15.9 조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서신

1. 각 당사국은 요청하지 아니한 스팸과 텔레마케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서신을 규제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각각 자국의 법과 규제를 조건으로, 요청하지 아니한 상업용 전자 서신의 규제와 관련하여 양자적으로 그리고 국제 포럼에서 협력한다. 협력 분야는 스팸과 텔레마케팅에 대한 기술적, 교육적 및 정책적 접근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제 15.10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전자인증이란 전자 통신 또는 거래의 당사자에 대한 신원을 입증하는 절차 또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서명이란 서명자를 확인하고 그 서명자가 전자기록에 서명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활용할 목적으로 전자기록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전자적 자료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전자적 전송이란 전자기적 또는 광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전송을 말한다.

개인정보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무역행정문서란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을 말한다. 그리고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서신이란, 인터넷 운반 서비스 또는 그 밖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동의 없이 또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전자적 주소로 송부되는 전자 서신⁸⁶(음성 서비스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⁸⁶ 이 정의의 목적상, “전자 서신”이란 모사전송 서신을 포함할 수 있다.